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

이 성 희**

1. 서론

우리 사회의 청년층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3%로 OECD 평균(52.6%)보다 10%나 낮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2.7%로 공식 실업률보다 두 배나 더 심각한 실정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겪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 3% 수준의 저성장·저고용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청년층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 부족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연령별 인구분포로 보면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전년대비 10.4% 증가)인데, 이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고,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전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

* 이 글은 이성희 외(2017),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usedori@kli.re.kr).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개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2016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다. 사업참여 대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서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내용은 사업참여 청년에게는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 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¹⁾

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에서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2009~17년).

이 사업에 참여가능한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1) 2017년 추경예산편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400만 원을 더 지원해 2년 근속 시 1,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인턴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초과하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30% 미만인 경우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중소기업)-50만 원(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 시 390만 원(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 정액 지원한다(비자발적 이직 시 부지급, 자발적 이직 시 일할 계산). 취업지원금은 인턴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80만 원을 지원한다(정규직 전환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지급).

Ⅲ.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운영 현황

1.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임금수준, 중도탈락률, 고용유지기간과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2015~2017년 기간에 일모아DB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2015~2017년의 취업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2015년에는 3만 5천 명, 2016년에는 2만 9천 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2017년에 중단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6천8백 명, 2017년에는 본격 사업이 추진되어 10월까지 2만 8천 명이 참여했다. 2016년에는 사업 재편과정이라서 청년

〈표 1〉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자	청년인턴	35,126(100.0)	29,575(81.2)	-
	청년내일	-	6,867(18.8)	28,941(100.0)
	전 체	35,126(100.0)	36,442(100.0)	28,941(100.0)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들이 표본 근로자들의 81.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는 그 해에는 초기이고 시범사업이어서 참여자 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 사업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을 보기 위해 사업 참여 시 기업들의 고용보험DB에 등록되어 있는 초임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의 임금수준은 월 172~174만 원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면에는 적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약정 임금이나 초임 모두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사업의 참여조건으로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기준을 설정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2〉 사업 참여자들의 임금수준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초임 (고용보험DB)	N	34,118	28,857	6,552	27,390
	M	1,656,853 (380,672)	1,740,602 (395,924)	1,729,859 (401,124)	1,854,583 (412,764)

3. 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률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비율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은 약 11% 정도인데,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4.9%로 낮아지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선발만 진행한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중도탈락률을 잡으면 6.3% 정도로 약간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2015~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는 여전히 많이 낮다. 사업 청년들의 수료 후 취업이나 조기 채용 등의 성과를 보면,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선발만 되어 있는 참여자들을 제외한 경우)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중도탈락률도 11.4%를 보이고 취업 성과(조기 채용과 수료 후 취업)도 76.8%로서 2017년보다는 많이 낮는데, 이때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표 3〉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최저임금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1)	(2)
중도탈락	4,059 (11.6)	3,409 (11.5)	783 (11.4)	1,421 (4.9)	1,421 (6.3)
조기 채용	1,141 (3.3)	1,261 (4.3)	108 (1.6)	358 (1.2)	358 (1.6)
수료 후 취업	26,091 (74.3)	21,268 (71.9)	5,275 (76.8)	19,498 (67.4)	19,498 (85.7)
전 체	35,126 (100.0)	29,575 (100.0)	6,867 (100.0)	28,941 (100.0)	22,749 (100.0)

주 : 선발만 되어 있는 상태의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산출하였음.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고용유지기간 비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구간별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²⁾

2015~16년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들의 근속현황을 보면 3개월까지는 87~88%의 고용유지 비율을 보이다가 3개월 후에는 70~74%, 6개월 후에는 62~66%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청년인턴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은 42~43% 수준인 데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는 74%로 높게 나타난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고용유지 비율이 확인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는 특징적이게도 시간이 가도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근로자들에게 누적되는 적립금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수급 실현 날짜도 가까워져서 이 탈의 심리적 비용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사업이 추진되었던 2015년에 이 사업 비참여자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기간별 고용유지비율을 보면, 3개월 유지비율은 76%, 6개월 유지비율은 61%, 9개월 유지비율

2) 본 연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집단의 고용유지효과와 고용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용보험 DB에서 비참여 집단을 추출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청년층 근로자는 고용보험DB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해당 연도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 5만 명을 추출하였고, 그 중 2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을 사용하였다. 사업체 표본은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5만 명을 추출하여 성향점수매칭법의 대상 표본으로 삼았다.

은 52%, 1년 유지비율은 46%, 1.5년 유지비율은 33%, 2년 이상 유지비율은 26%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5년보다 약간 더 낮은 비율들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비율이 높고,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4〉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 비교

A. 사업 참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N	M	N	M	N	M	N	M
인턴기간	34,195	0.87	28,892	0.87	6,578	0.87	19,925	0.88
3월 이상 고용유지	34,195	0.72	28,892	0.70	6,578	0.74	11,056	0.78
6월 이상 고용유지	34,195	0.64	28,892	0.62	6,578	0.66	1,176	0.76
9월 이상 고용유지	34,195	0.57	25,828	0.56	3,693	0.64	1,178	0.76
1년 이상 고용유지	34,195	0.42	12,823	0.43	439	0.74	-	-
1.5년 이상 고용유지	27,230	0.33	13,102	0.44	454	0.75	-	-
2년 이상 고용유지	27,918	0.35	-	-	-	-	-	-

B. 사업 비참여자

	2015년		2016년		2017년	
	N	M	N	M	N	M
3월 이상 고용유지	23,612	0.76	25,611	0.72	18,681	0.71
6월 이상 고용유지	23,612	0.61	25,611	0.57	11,634	0.57
9월 이상 고용유지	23,612	0.52	25,611	0.48	3,186	0.47
1년 이상 고용유지	23,612	0.46	21,691	0.42	-	-
1.5년 이상 고용유지	23,612	0.33	9,656	0.32	-	-
2년 이상 고용유지	20,034	0.26	-	-	-	-

5.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증대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기업의 근로자 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기업단위로 측정된 근로자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³⁾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비율의 추정치를 보면(2016년 자료와 풀링 자료), 두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들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더 양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변수의 추정치를 2015~17년 자료와 풀링 자료에서 보면, 네 가지 모형들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들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참여자가 많을수록 고용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그 두 가지 사업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5〉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2015년	2016년	2017년	풀링
상수	-0.203 (0.094)	-0.189 (0.071)	-0.201 (0.037)	-0.204 (0.040)
청년내일 참여자 비율	-	0.029*** (0.011)	-	0.028*** (0.010)
전체 근로자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0.009*** (0.000)	0.007*** (0.000)	0.006*** (0.000)	0.007*** (0.000)
약정 임금	0.086*** (0.020)	0.056*** (0.018)	0.036*** (0.008)	0.055*** (0.009)
기업규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	생략			
업종	생략			
2016년	-	-	-	0.004 (0.006)
2017년	-	-	-	-0.007 (0.012)
R ²	0.076	0.075	0.184	0.085

주 : * p<0.10, ** p<0.05, *** p<0.01.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은 3.55명, 고용증가율은 6.67%p만큼 고용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조금 더 낮아져서 비참여자 대비 고용증가분은 3.08명, 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인턴사업도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비참여자보다 2.33명의 고용증가분과 4.85%p만큼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청년인턴사업은 고용증가분은

3)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전체 근로자 수 중 청년내일채움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의 비중(청년내일채움 참여자 비중)과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중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 비율(전체 근로자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등 두 가지이다. 전자는 청년인턴사업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후자는 그 두 가지 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이다.

로 2.99명의 고용증가분과 5.88%p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유형별 고용 변화(사업체 단위)

		참여 기업(A)	비참여기업(B)	격차(A-B)
2015년(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248명	0,916명	2,332명
	고용증가율	10.883%	6.034%	4.850%p
2016년(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098명	0,111명	2,987명
	고용증가율	9.684%	3.802%	5.883%p
2016년(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997명	0,448명	3,550명
	고용증가율	11.370%	4.705%	6.665%p
2017년(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355명	0,272명	3,083명
	고용증가율	9.524%	4.672%	4.852%p

주 : 2015년과 2016년은 1년간 고용변화이고, 2017년은 11개월간 고용변화임.

IV.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평가(FGI 사례연구)

1. 우수인재 채용효과와 장기근속 유도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 및 위탁운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업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업 참여 이후에 2년 근속하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목돈마련 기회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 내용이 기존 정규직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효과를 실

감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구인 중소기업 발굴의 어려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참여 구인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하는 기업 측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고,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 지급 등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보니 중소기업 측에서는 선뜻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운영기관들이 취업알선 전문업체이고, 이들 운영기관은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별로 없다 보니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채용되기 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업하기 전에 대학 지도교수나 주변 친구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왔다. TV나 언론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기사도 많이 게재되고, 인터넷에도 집중 홍보를 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광고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대학 졸업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V. 결론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고용효과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 필요성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들의 참여가 많고, 중소기업에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사업은 모두 임금수준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 사업이고, 고용유지율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청년인턴사업보다 낮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만 몰릴 것이 아니라, 팬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대상 범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근속을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 초기에 사업참여가 가능한 청년 대상자를 청년인턴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3개 사업 참여자로 제한해 놓았다.

이러한 경로설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참여경로를 제한해서 사업취지를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경로 제한이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대상 현장 사례연구에서는 이런 장애요인이 확인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소기업의 팬찮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전의 경로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참여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경로제한 없이 그냥 16~34세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일자리 질 보장을 위한 초임 기준 조정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규정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의 70%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90.8%가 100인 이하 사업장인데 이들 중소기업에서는 초임기준을 2018년도 최저임금 110%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소기업에서는 유능한 청년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술숙련을 쌓도록 해서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취지를 살려나가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초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의 연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은 2년 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근속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특수적인 숙련형성도 되어 있고, 조직문화에도 적용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종료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사업에도 일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이나 지원 방식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에게 공제금 납입계좌 확인 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면 개인별 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단계마다 공제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도 들어가서 공제기금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받을 목돈이 이렇게 계좌에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근

로자가 실시간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이 자신의 공제 계좌에 기금이 쌓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당신의 공제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검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그만큼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사업에 대해 홍보가 되면 사업 참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경험한 청년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부터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바로 알기 쉽게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현장 사례연구에서는 현재의 사업명칭을 무슨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먼저 명칭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제나 약칭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설명회」.
 _____(2017), 「2017년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
 _____(2017), 「2017년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
 김두순·김봉원·최종일·김정호(20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영향효과』, 고용노동부.
 남재량·이규용·주무현(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류장수(2015),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31~45.
 류장수·김중환·박성익·조장식·하봉찬(20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실태조사 및

- 고용효과 심층 분석평가』, 고용노동부.
- 류장수·박성익·조장식·정현주(201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박성익·류장수·김종한·조장식(2016),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자의 재직기간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2), pp.285~294.
- 이규용 외(2011),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민 외(2015),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 주무현 외(2016), 『청년고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윤희숙 외(2016),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